의안번호	2209783
의 뢰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5.
추계번호	25E226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2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3년 8년간 총 3,548억원(연평균 444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−282	−507	−507	−507	−507	−507	−507	−225	−3,548	−44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–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– (개정안) 2032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33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3년 5%, 2034년 이후 9%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–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
○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○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3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1) 조세지출 실적

❑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709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(9.6%↑) 수준

[표 2]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[1]	2년 평균[2]	5년 평균[3]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	634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	(9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2) 2023~2024년 평균
3) 2023~2024년 평균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❑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○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
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○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2년 9%p, 2033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2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3년은 5%, 2034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3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
현행(A)	5	9	9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4	0

○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
○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2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3년 8년간 총 3,548억원(연평균 444억원)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507	-507	-507	-507	-225	-3,548	-44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